의안번호	2203955
의 뢰 인	서왕진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1.
추계번호	24C3788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(안 제3조)	50	-	-	50	-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실태조사)	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실태를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함 ※ (현행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)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조의2(실태조사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사의 인권 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기존 사회복지사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인권 침해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할 경우 기존 실태조사 예산으로 수행가능할 수 있으나, 본 추계서는 보수 등에 관한 실태와 인권 침해 실태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-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사회복지사의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2억 7,800만원 소요

○ 지역별 사회복지사 인권 침해 실태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

❑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「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」의 연구용역비 단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○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에 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「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」를 실시(5천만원 소요)

-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❑ 추계결과,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(안 제3조)	50	-	-	50	-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